

상담기록관리부

상담일시	2023. 7. 4.(화)	상담유형	[] 방문 [●] 전화 [] 기타()	
상 담 요청자	성명	최○○	생년월일	-
	소속/직위(직급)	○○○○팀 / ○○	연락처	031-560-○○○○

상담 내용 휴직자도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

상담 결과

-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,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남양주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,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합니다.

2023년 7월 4일

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직무대행 송 해 영



(서명 또는 인)